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2. 3. 30.(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3인)

□ 불참위원 :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2인)

---

##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3차,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22-15-06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입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늘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조사 시 자료 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그 산정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그 전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대기업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법제처 사전심사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입법예고안 제43조의2를 제43조로 변경하고, 별표 7의2를 별표 4의2로 변경하는 등 일부 기술 방식을 변경하였고 일부 조문에 대한 삭제를 법제처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22-15-06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등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마련, 과징금 부과 등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지난 10월 위치정보법이 개정된 이후 11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 절차 등 개정입니다.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관련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명확화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체납 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절차 마련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한 경우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마련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 달성한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실패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의 공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대해 특별히 반영사항이 없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사전심사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변경 등록·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변경등록·신고사항에 대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납부 및 독촉절차 중복규정 삭제입니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제19조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명확성 및 간결성 제고를 위해 자구 및 체계 수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바로 마무리하고, 4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 후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22년 4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제·개정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치정보 분야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관리·감독 체계 강화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홍보, 교육 등을 통해서 개정 위치정보법의 원만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22-15-06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이용자보호과장 직무대리**

-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경과입니다. '21년도 12월부터 '22년도 2월까지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평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평가 목적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신속한 이용자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나>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자는 이용자 규모와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비해 2개 증가한 4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통신사업자는 3개 서비스 분야, 총 21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평가분야를 세분화하고 평가분야별 기준을 설정하여 21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앱마켓 서비스 4개, 검색·SNS 6개, OTT·개인방송 5개, 쇼핑·배달 서비스는 4개, 모빌리티·중고거래 서비스는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세부 사업자명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을 실사할 계획이며, 특히 ARS 시스템과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대상에 처음 추가된 12개 서비스와 올해 추가된 2개 서비스 등 14개 서비스는 시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평가 기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2항의 각 호에 따른 5개 분야, 총 9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각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내·외부 의견과 법령 개정사항,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표 항목을 조정·신설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척도를 정량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 내역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평가절차 개선사항입니다.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와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업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표준작성표를 제공하여 자료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공개일정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평가의 시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통신전문가 등 총 20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전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점수와 등급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각 사업자별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등급과 점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 시 결정하겠으며, 시범평가 대상 사업자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는 포상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 감경하겠으며, 우수사례와 미흡사항은 공유하여 업무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5월부터 9월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10월 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평가절차 개선 사항 중 자가진단 제도 도입은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공개 시기도 지난해 12월에서 금년에는 10월로 단축했는데 시의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평가 대상이 된 알뜰폰 2개사와 모빌리티·중고거래 등 부가통신 2개사는 자료제출이나 협조 측면에서 미흡함이 없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절차를 개선해서 평가계획을 잘 만들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환류 과정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이용자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용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같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평가를 통해서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평가계획에는 대상 사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서 일정을 단축하는 등 평가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 이는 지난해 평가 시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사무처가 노력해서 개선한 것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단축된 일정에 맞춰서 평가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와 사무처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4월 6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6분 폐회 】